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란

정원석 연구위원

## 요약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보험가입으로 인한 징벌효과 무력화와 보험료의 전가 가능성임.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주별로 상이하나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대형 주(州)들의 경우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허용사례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항만,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sup>1)</sup>
  - 가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울 경우 피해를 입힌 만큼만 보상하는 현재의 전보배상 제도에 비해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는 안전관련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sup>2)</sup>
- 본고에서는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1) MBC 뉴스데스크(2014. 5. 21),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67087\\_13490.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67087_13490.html) 참조.  
2) 정원석(2014),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KIRI weekly, 주간포커스.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형평성<sup>3)</sup>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보험가입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므로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sup>4)</sup>, 보험가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등이 있음.<sup>5)</sup>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래 목적인 징벌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있음.<sup>6)</sup>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상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주장<sup>7)</sup>, 그리고 배상액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므로 보험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임.

■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각 주별로 상이하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음.<sup>8)</sup>
- 우리나라와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허용하지 않고 있음.<sup>9)</sup>

〈표 1〉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미국 주별 징벌적 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여부

주, 나라	인구 수	경제규모	보험 허용여부
캘리포니아	3,833만 명	19,589억 달러	불허
텍사스	2,644만 명	13,081억 달러	결정되지 않음
뉴욕	1,965만 명	11,579억 달러	불허
플로리다	1,955만 명	8,430억 달러	불허
일리노이	1,288만 명	7,511억 달러	불허
대한민국	5,000만 명	11,162억 달러	-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 2012년 자료<sup>10)</sup>와 IMF 2012년 자료<sup>11)</sup> 그리고 WilsonElser(2011)<sup>12)</sup>을 재구성함.

3) McCullough Campbell & Lane(2005), "The Insurability of Punitive Damages".

4) Mazza v. Medical Mutual Insurance Co.(1984), 319 S.E.2d.

5) First National Bank v. Fidelity & Deposit Co.(1978), 283 Md. 228, 243, 389, 367.

6) McCullough Campbell & Lane(2005), "The Insurability of Punitive Damages".

7)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보험가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서비스 및 재화의 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됨.

8) WilsonElser(2011), Punitive Damages Review.

9) 우리나라와 비교될 만한 미국 경제규모 상위 9개 주 중 텍사스를 제외한 8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주별 경제규모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뉴저지 등의 순서임.

10)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2), "WIDESPREAD ECONOMIC GROWTH ACROSS STATES IN 2011".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징벌로서 지불해야할 비용을 보험료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배상금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는 징벌적 배상에 대한 위험인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가 상이한 점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유사한 미국의 대형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초기 단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제도가 정착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kiri](#)

11) IMF(2012),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12) WilsonElser(2011), Punitive Damages Review.